조사료 생산기반 확충

| 세부사업명 | 조사료생산기빈 | !확충 | | | 세목 | 사시단 | 경상보조, 체경상보조, 체자본보조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내역사업명 | · 조사료 사일 · 조사료 장거 · 조사료용 기 · 조사료용 종 · 초지조성 및 · 가공·유통시설 · 조사료 전문 | 리 유통비 지원 계·장비 지원 자 구입 지원 기반시설 지원 설 지원 | 4 | | 예신 (백만{ | | 76,592 |
| 사업목적 | ○ 국산 조사료 | . 생산·이용을 [:] | 활성화하여 | 생산비 절견 | 감 등 축산 | 업 경쟁력 | 강화 |
| 사업 주요내용 | ○ 조사료용 7 양질의 조시 | 계·장비 및 시 료 생산·유통기 | | | 원을 통해 | 부존자원 | 활용 및 |
| 국고보조 근거법령 | ○ 축산법 제3. 3조제3항, / | 조제1항 및 제 사료관리법 제3 | | | 1항 및 제 | 2항, 낙농? | 진흥법 제 |
| 지원자격 및 요건 | 이하 "경영: | 농어업·농어촌 인 등(본 사업 체"라 한다) - 내정사업관리 기 : 농업협동조합 | 및 식품산 1에서는 조/ 농업법인(영 기본규정 제영 합법에 따라 | 업기본법어 사료 생산· 당조합법()1조 및 별 설립된 지 | 따라 설 이용에 참 인, 농업회 표10의 요 역 농·축·나 | 립된 영농 여하는 법 사법인)은「 건을 갖추 낙협, 한우2 | 조합법인, 인으로서 농림축산 어야 함. |
| 지원한도 | ○ 조사료생산기 | 기반확충사업 / | 시행 지침을 | 준용하여 | 예산 범위 | 내 운영 | |
| 재원구성 (%) | 국고 10~ | ·50 지방비 | 30~60 | 융자 | 30~100 | 자부담 | 10~70 |
| | | · | | | | (단위 | : 백만원) |
| 연도별 | 구 분 | 2017년 | 2018년 | 2 | :019년 | 2020 | |
| 전포될 재정투입 | 합 계 | 104,263 | 97,093 | 3 | 87,384 | 83,0 | 79 |
| 현황 | 보 조 | 81,839 | 80,435 | 5 | 76,577 | 76,5 | 92 |
| | 융 자 | 22,424 | 16,658 | 3 | 10,807 | 6,48 | 37 |
| 담! | 담당기관 담당과 | | | | 자 | 연릭 | ᅡ처 |
| 농림축산식품 |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| | | 박수 | ·연 | 044-201-2 | 2356 |
| 신청시기 |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, 시군구 | | | | | 시군구 | |
| 관련자료 | '20년도 조사료 | 20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| | | | | |

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.

| 담당기관 | 담당과 | 담당자 | 전화번호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축산식품부 | 축산환경자원과 | 과 장 박홍식 서기관 권우순 | 044-201-2351 044-201-2355 |
| 농협경제지주 | 친환경방역부 | 부 장 조재철 팀 장 최강필 | 02-2079-8440 02-2079-8455 |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국산 조사료 생산·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
 - 조사료용 기계·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·유통기반 확충 도모

2. 근거법령

○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,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,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,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백만원)

| 구 | 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|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합 | 계 | 153,984 | 157,707 | 136,291 | 119,608 | 104,263 | 97,093 | 87,384 | 83,079 |
| 보 | 조 | 106,697 | 110,125 | 94,309 | 81,326 | 81,839 | 80,435 | 76,577 | 76,592 |
| 융 | 자 | 47,287 | 47,582 | 41,982 | 38,282 | 22,424 | 16,658 | 10,807 | 6,487 |

Ⅱ.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<공통>

※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.

1. 사업대상자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의한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·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 - * 농업인, 농업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.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농업인 : 경종농가,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

- 농업법인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(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·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"경영체"라 한다)
 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.
- 생산자단체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·낙협, 한우조합 등
-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
 - *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(사일리지제조비, 장거리유통비에 한함)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<별표2>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.(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)

3. 지원조건

| 내역시 | 사업명 | 기금보조 | 지방비 | 기금융자 | 자부담 | 융자조건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사일리지 제조비 | 30 | 60 | - | 10 | - |
| • 조사료 | 종자·볏짚 처리비 | 30 | - | - | 70 | - |
| 생산 | 초지조성 (보완) | 50 | - | 50 | ı | 연리2%(3년거치 7년상환) |
| | 경영체 기계·장비 | 10 | 30 | 30 | 30 | 연리2%(2년거치 3년상환) |
| • 기계·장비 | 농가 | - | - | 80 | 20 | 연리2%(2년거치 3년상환) |
| | 기공 유통시설 | 30 | 30 | - | 40 | - |
| • 가공유통 및 포직 | 조사료 품질관리 | 50 | 50 | - | - | - |
| 및 품질 관리 |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| - | - | - 100 - | - | 연리2%(2년거치 일시상환) |
| 조사료공급활성화 |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| 30~40 | - | - | 60~70 | - |
| 월 28 와 | 교육홍보 | 100 | - | - | - | - |
| | 사일리지제조 | 50 | 40 | - | 10 | |
| , , , , | 종자구입 | 40 | - | - | 60 | |
| • 전문단지 조성 | 기계·장비 | 20 | 30 | 30 | 20 | 연리2%(2년거치 3년상환) |
| 0 | 퇴·액비 | 40 | 60 | - | - | |
| | 입모중파종 | 30 | 30 | - | 40 | |

* 지방비(시·도비, 시·군비) 분담 비율은 1: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·도비는 10~50%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

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·운송비 지원

1. 사업대상자

-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(계약 재배 포함)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(간척지, 하천부지, 군부대 부지 등)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,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
 - * 사료작물(forage crop) : 옥수수, 보리, 호밀, 귀리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라이그라스, 총체벼 등(목초 포함, 짚류 제외)
 - * 사일리지(silage) :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
 - * 헤일리지(haylage) :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%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
 - * 건초(hav):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~20%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
- 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 - * 단, 시·군 지원은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·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 한정한다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(자가 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)
-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(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)를 해당 시·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%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
-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
-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

3. 지원대상

○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, 망사(net), 발효제, 연료 및 감가상각비, 단거리 운반비용, 인건비,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, 보온덮개 등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,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(50km 미만)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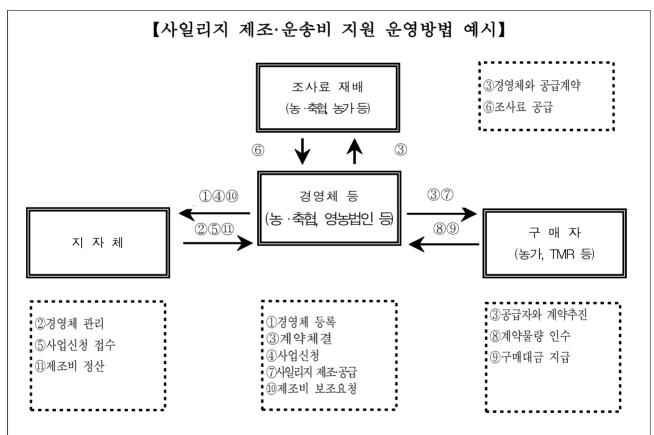
5. 지원형태

○ 축산발전기금 보조 30%, 지방비 60%, 자부담 1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

- 지원단가 : 6만원/톤(18톤/ha)
- 지급방법 :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·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(단, 자가소비용은 제외)
 -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%(최소 5개 이상)의 시료를 채취 (중량계근 병행)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 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
 - 시·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(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)에 따라 지원기준의 50%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,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
 - 이 경우 시·군에서는 <u>4월말</u>까지 지번별 재배면적, 작물종류, 작황 등을 확인 (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)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
 - * 예시)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%(540만원)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(A~E)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
 -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, 기존 중량계근방식*으로 지원
 - * 중량계근방법: 전량계근 또는 표본계근[곤포사일리지 1일 제조량의 2%(최소 5개 이상, 시·군, 읍·면 공무원 입회)]
 - *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. 현장에서 계근 가능
 - *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: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, <별표1>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

- 또한, 시·도(시·군)은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영 가능
- * 관외 유통물량을 우선 지원하고,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의 사일리지 제조· 운송비를 지원
- * 단,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「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」중 곤포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,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준용
- 자부담 10%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,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
- * 18톤/ha은 예산편성 기준이며, 시·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



- 경영체 운영방법
 - 재배농지 소재 시 ·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
 - *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·군 이외에 타 시·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·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(단,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)
 - *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·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·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
 -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·공급 계약
 -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·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
 - *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

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

1. 사업대상자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 (TMR 및 TMF, 이하 'TMR업체'라 한다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품질 동계 C등급·하계 B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(짚류 제외)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(다만,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) 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·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, 축산단체 (전국한우협회, 한국낙농육우협회, 한국조사료협회, 한국종축개량협회, 한국 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. '유통비 지원사업'에서 이하 같다) 및 관할 시·군에 제출
 - * 농업인은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·허가농가, TMR는 농·축· 낙협 TMR 및 축산단체(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, 한국조사료협회)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·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

3. 지원대상

○ 장거리 운송비, 생산구축비, 유통촉진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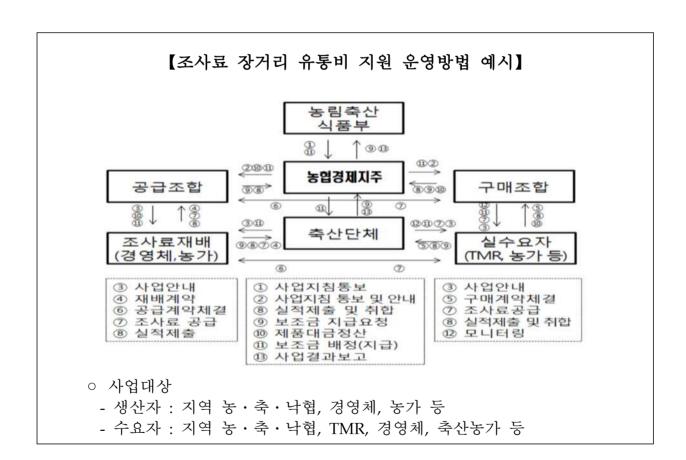
4. 지원형태

○ 축산발전기금 보조 30%~40%, 자부담 60%~7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| 구 분 | 대 상 | 지원조건 | 지원기준 |
|--------|-----------|---|---|
| 장거리운송비 | 단체, 경영체 등 | 타 시·군 50km 이상 유통 | 50km~100km미만 : 실운송비의 30%, 100km이상 : 실운송비의 40% (30원/kg 한도) |
| 생산구축비 | 단체, 경영체 등 |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·군으로 50km 이상 유통 | 5원/kg |
| 유통촉진비 | TMR 업체 | 연간 5백톤 타 시·군으로 50km 이상 구매 *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| 10원/kg |

- *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<별표2>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
- *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



③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

1. 사업대상자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 이용하려는 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- 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3. 지원대상

-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 - * 상세내용은 <별표3> 참조
-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
 - 사일로 유형 : 철근콘크리트 트렌치, FRP 사일로 등
 - 사일로 용량(1기당): 50톤(78m³)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·장비 구입비

5. 지원형태

- 경영체, 생산자단체, 시·군 : 축산발전기금 보조 10%, 지방비 30%, 융자 30%(연리 2%, 2년 거치 3년 상환), 자부담 30%
 - * 융자 30%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(지자체 포함)
 - * 시·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(서식 10)
- 농업인 : 축산발전기금 융자 80%(연리 2%, 2년 거치 3년 상환), 자부담 20%
 - *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
- 전문단지 : 축산발전기금 보조 20%, 지방비 30, 융자 30%(연리 2%, 2년 거치 3년 상환), 자부담 20%
 - *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보조지원

- (경영체) 150백만원(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,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)
-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상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
- 단, 옥수수,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(재배 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,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)
- * 예시)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(100백만원)하여 지원금 산정
-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·생산자단체에 1.5억원 추가 지원, 지자체 참여시 3억원, 조사료 생산 거점 농·축협·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 (작업)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
- 경영체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
-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(소유자 변경 없이,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)된 부속장비(부속작업기, 결속기(베일러) 등)의 경우 추가 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
-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(소유자 변경 없이,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)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
-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(<별표3> 참조)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
- 융자지원 : 기 융자지원분(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)을 포함한 지원 하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
 - 농업인(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) : 5억원 이내
 - 경영체 : 자기자본의 200% 이내
 - 생산자단체 :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<기계·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>

-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·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(보조·융자)되지 않도록 조치
 - 시·도(시·군·구)는 기계·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,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·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
- 기계·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,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·장비와 함께 공급
 -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<별표2>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
 - 기계·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,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(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)
 - 기계·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(안전관리)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,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·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
-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·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(12월)
 -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·장비 공급, 효율적인 사후관리, 품질향상 등을 위해 "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"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
 - * 기계·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"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"을 준용(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)
- 제조·수입업자는 지원 기계·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(<별표 4>, <별표5> 참조)
-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·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(별도서식)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
 -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

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

1. 사업대상자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,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

3. 지워대상

○ 옥수수, 보리, 호밀(호맥)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총체벼, 사료용 콩, 진주조(펄밀렛),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5. 지원형태

- 축산발전기금 보조 30%, 자부담 70%
 - *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
-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, 농업기술센터 (국내 생산 종자분), 지역 농·축협(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)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(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)
-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·확인
-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종자공급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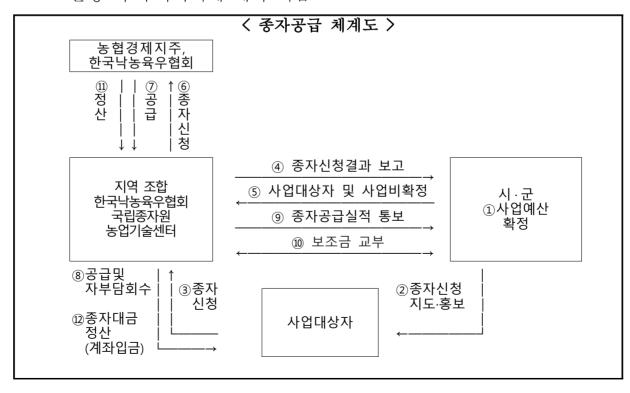
종자신청 ·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종자공급 ·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 에게 공급

종자대지급 ·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·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
○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

- <자 담분> 시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
- <보조분>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(인수증 또는 현지확인) 후 보조금 지급
-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
- 조사료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



⑤ 초지조성 지원

1. 사업대상자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"③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"과 동일
 - *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

3. 지원대상

○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,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초지조성(경운·불경운·임간초지)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·자재대· 측량수수료 등
 -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"초지조성단가"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
-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
 - 경운초지 : 토지등급이 1-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불경운초지 : 토지등급이 2-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,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임간초지: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토지등급별 판정기준

| 등 급 | 경사도 | 유효토심 | 자갈함량 | 토성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급지 | 20°이하 | 100cm | 5%이하 | 사양토, 양토 |
| 2급지 | 21 - 30 | 99 - 50 | 6 - 20 | 식양토, 식토 |
| 3급지 | 31 - 35 | 49 - 30 | 21 - 30 | 사토, 중점토 |
| 4급지 | 36 이상 | 29 이하 | 31 이상 | 입사질토 |

-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·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,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(다만,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)
-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·중급초지를 중·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·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

5. 지원형태

- 초지조성 : 축산발전기금 보조 50%, 융자 50%(연리 2%, 3년 거치 7년 상환)
 - *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융자금 지원기준은 "③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"과 동일
-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

⑥ 기공·유통시설 지원

1. 사업대상자

-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(hub)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
- (보완지원)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, 기계·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
- (운영지원)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지원자격
 -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: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,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.
- 지원요건

<유통센터>

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·배출자(농업인, 경영체 등)와 공급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,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

-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
-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(사일로)에 보관 후 공급
-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
- * 단,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**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**하며,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
- 생산·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,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
-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, 기존 TMR 공장 내 운영 병행 시 지원 제한

<TMR 가공시설>

- 신규지원 :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
- * 조사료 소요량의 80%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%이상으로 하되,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.
- 보완지원 :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인정을 받았거나, 받고자하는 업체(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)로서,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
- * 다만, HACCP 인증(또는 인증계획)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하고자 절단기,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

3. 지워대상

- 공장, 사무시설, 저장·보관시설, 포장제조설비, 계근·방역시설, 특수운반차량 (농산부산물에 한함), 기계·장비 및 기타 가공·유통센터 설비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*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,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가공·유통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한 기계·장비 구입, 시설 건축비 등
 -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기타 가공·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5. 지원형태

- 축산발전기금 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- 운영자금 :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%(연리 2%, 2년 거치 일시상환)
 - *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(총사업비 30억원 기준)
- 기존 TMR기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(총사업비 9억원 기준)
-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. 다만,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
 - 사업계획서, 재무제표,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7.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

○ 세부 추진요령 참고

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

1. 사업대상자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지원자격 :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,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(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)이 가능한 지역
- 지원요건
 - (광역단지) 동일 시·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(동계,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)을 400ha이상 확보하되,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 으로 확보한 지역
 - *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·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
 - (특화단지) 동일 시·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(동계,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)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(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, 간척지, 하천부지 등)
 - (중소단지)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 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
 - (종자단지)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(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)

3. 지원대상

○ 사일리지제조비, 조사료용 기계·장비, 조사료용 종자,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, 입모중파종비(항공파종시 지원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, 기계·장비 구입비,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, 퇴·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형태
 - 사일리지제조 : 축산발전기금 보조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
 - 기계·장비 : 축산발전기금 보조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, 융자 30% (연리 2%, 2년 거치 3년 상환)
 - 종자 : 축산발전기금 보조 40%. 자부담 60%
 - *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
 - 퇴·액비 : 축산발전기금 보조 40%, 지방비 60%
 - 입모중 파종비 : 축산발전기금 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- 사업 의무량
 -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. 다만,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, 옥수수·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500백만원(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,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대상 재배면적에서 제외)
 - 단,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, 옥수수,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,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

7.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

○ 세부 추진요령 참고

Ⅲ.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(1월)
 - 품질검사 및 등급제,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, 가공·유통시설 지원사업, 전문단지 지원사업

시·도(시 ·군)

- ※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,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. 구비서류 등을 제출
 - 가공·유통시설,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.
- 시·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에 시달(전년도 10월)
 - 지방비 확보, 사업신청·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, 농가교육·지도 실시
- 시·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에 보고(전년도 10~11월)
- 시·도는 시·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(전년도 12월)
-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(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) 관할 시·군·구에 제출 (1월말까지)
-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·공급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서 등*을 첨부하여 시·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·장비 지원 신청
 - * 계약서 등 :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·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 증빙 서류 일체
 - 신청 및 계약기간(권장): 전년도 9월 중순~10월말

농협경제지주(일선조합), 축산단체

《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》

○ 사업희망 생산자단체(지역농·축·낙협, 경영체)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, 축산단체 및 관할 시·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

2. 사업자 선정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《가공·유통시설》

-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·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 대상자 선정
 -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"조사료 소요량의 80%이상 (낙농용 30%이상)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"를 명시(신규지원에 한함)

시·도(시·군)

- 시·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
 -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
 - *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
- 농식품부의 시·도별 사업비 배정(1월)에 따라 시·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
- 시·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·도에 제출, 시·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2월말까지)
 -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(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)에 입력 병행(시스템 매뉴얼 참고)

농협경제지주(일선조합), 축산단체

《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》

-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(장거리 운송비, 생산구축비, 유통촉진비)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·공급량을 파악하고, 사업량·운송단가·사업 대상자 등 확정
-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·구매신고서, 조사료 공급(구매) 계약서, 대금지급 영수증,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 대상자 선정

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시·도(시·군)

- 시·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(보조사업자)에게 통지
- 각 시·도 책임하에 시·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
 -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
 - 시장·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, 미보완시는 시·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
-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·장비 구입 영수증, 사진,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
-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(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)
- 시·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
 -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(www.agrix.go.kr)에 입력 병행

농협경제지주(일선조합), 축산단체

《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》

○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·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

□ 공통사항: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
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 - 시·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·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
 - 시·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·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
 - 시·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
 - 시·군 및 시·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
- 다만, 조사료 가공·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
- 기계·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
 -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(사업자금 집행의 원칙)을 준용
 - 시·군은 기계·장비 구입비 지원시
 - ·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·장비(품명, 형식명, 기대번호 등)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,
 - · 기계·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, 이미 자금 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·확인
 -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·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

□ 협조사항

《지방자치단체》

-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·홍보
-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·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, 시비처방서 발급,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
-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·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
 - 대규모 휴경지, 간척지, 하천부지, 벼 채종포,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
-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·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
- 경영체가 한우회,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
-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,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

《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》
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
-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

《농촌지도기관(축산과학원 등) 및 관련단체》

-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
- 사료작물의 파종·시비, 조사료 생산 및 이용, 기계·장비의 사용 방법,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
 - *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·액비를 사용토록 유도

4. 자금배정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시·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(1월)

시·도(시·군)

○ 시·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·군별 사업비 배정(1월), 시·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

농협경제지주(일선조합), 축산단체

《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》

- (축산단체)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
- (농협경제지주)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, 자금 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

5. 이행점검단계(사후관리 및 제재조치)

농림축산식품부

-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
-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
 - 점검 대상 및 일정 : 시·군·구(도별 1개 이상), 연 1회이상
 - 점검반 : 농식품부, 시·도 현지방문 점검
- 점검항목
 -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확인
 - 사업추진실적 :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

시·도(시·군), 농협경제지주(일선조합), 축산단체

-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(반기 1회 이상)하고,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
 -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,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
 -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
- 시·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, 사업비 집행(매월 소요액을 시·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)
- 사업완료시 <서식 3>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,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(자부담분 포함)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.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
-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,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

- 보조(융자)금 부정수급,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*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(융자)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
 - * 사업대상자가 유통·공급한 조사료(볏짚 포함)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시·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(농협경제지주 협조)
 - *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,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·도(시·군·구)에 통보하고 해당 시·도에서는 경고조치
- (사일리지 제조·운송비)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"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"에 의거 사업취소,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
 -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
 -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
- (기계·장비)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·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,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
 -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(서식 2. 경영체별 관리카드)을 작성·비치하고,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
 - *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
- (가공·유통시설) 시·도(시·군)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 자원 확보·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·점검하고,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
 - 시·도(시·군)는 가공시설(신규)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
 - * 시·군은 <서식 8, 9> 를 작성·비치

-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"에 따름
- 보조금(융자금)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

| | 사후 | 관리기간 | 처분제한 | –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_ 재 산 명 | 부터 | 까지 | 기 준 | 비 고 |
| ○ 초 지 - 조성및보완 | 보조금교부일 | 5년 | 초지전용 | ○지진, 산사태 등 천재·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, 전업 |
| ○ 조사료생산 기계·장비 | 보조금교부일 | 5년 (트렉터 8년) | 양도 | ·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·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·군수가 농림축산 |
| ○ 기공·유통시설 | 보조금교부일 | 시설·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| 담보·양도 |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|

○ 보고

- 시·군은 <서식1~10>을 작성·관리하고,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.

| 보고 사항 | 보고기한 | 보고기관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·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(기계·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) * <서식 1>, <서식 2>, <서식 3> | 사업 다음연도 1월 | 시·도, 농협경제지주 |

- *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『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』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.
- *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

Ⅳ.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※ 사업내용,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1.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

- 202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(공통서식)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('20.1월말까지)
 -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도(시·군)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(일선조합)
- 시·군에서는 시·도를 통해 '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'20.2월말)
- 농식품부에서는 시·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

2.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 또는 일선조합
-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: 2019년도 지원대상과 같음
- 신청 및 선정절차 :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(공통서식)와 사업계획서를 신청 기관에 제출('20.1월말까지)
 - 시·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,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,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, 시·도에 보고
 - 시·군은 시·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
 - * 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
3. 2021년도 사업 지원계획 예고

- □ 국내산 조사료 생산·보급 확대를 위해 '21년부터는 '20년도 조사료 생산·보급 사항을 평가하여 '21년 조사료 생산,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, 전문단지조성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
 - 평가반영실적(안): '19년 10월 ~ '20년 9월
 - 평가항목(안): 전년 대비 조사료 생산 증감 실적, 조사료 품질 등급 실적,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감 실적, 가축분뇨퇴액비 살포 실적, 예산 실집행 실적 등

※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

<농가>

-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·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·단지화 할 수 있는 자
- ㅇ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
- ㅇ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,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
- ㅇ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

<영농조합법인·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>

- 초지·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
- ㅇ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
- ㅇ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
- 공동구매·판매,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

<가공·유통시설 지원사업>

-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·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
-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·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
- ㅇ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

<공통사항>

- o 재배지에 퇴·액비 사용농가(경영체 등 포함) 우선 지원
- 도축장이 있는 시·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
- 친환경 유기 축산 인증농가 우선 지원

※ 지원 제한 및 후순위 지원

○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<u>징역, 벌금, 과태료, 인증·지정취소</u>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 제한

- 대상 제재 처분
- · 「축산법」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'축산업 허가 등록기준'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,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(보수교육 포함)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('20.1.1.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, '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)
- ·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5조(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)·제11조(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)·제17조(소독설비 및 실시 등)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
- ·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0조(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의 처리 의무)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
- ·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4조(인증의 취소 등)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·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「축산물 위생 관리법」제9조의4(인증의 취소 등)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·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9조(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)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·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「동물보호법」제2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
 - i) 징역(집행유예 포함). 벌금 : 3년
 - ii) 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 : 2년
 - iii) 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*, 인증·지정 취소 : 1년
 - *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: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

○ 구비서류

-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(관련서식은 시·도에 별도 시달)
- 시장·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

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

(단위 : 톤)

| 사일로 높이 | | | | | 1 | 밑 면 | 적 (m²) |) | | | | |
|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(m) | 6 | 7 | 8 | 9 | 12 | 15 | 18 | 25 | 50 | 75 | 100 | 120 |
| 1 | 3 | 3.5 | 4 | 4.5 | 6 | 7 | 9 | 12 | 25 | 37 | 49 | 99 |
| 2 | 6 | 7 | 8 | 9 | 12 | 16 | 18 | 26 | 52 | 78 | 104 | 208 |
| 3 | 10 | 12 | 13 | 16 | 20 | 25 | 30 | 42 | 83 | 125 | 166 | 332 |
| 4 | 14 | 16 | 18 | 21 | 27 | 34 | 41 | 57 | 114 | 172 | 229 | 458 |
| 5 | 18 | 21 | 24 | 27 | 36 | 45 | 54 | 75 | 150 | 224 | 299 | 598 |
| 6 | 22 | 26 | 30 | 34 | 45 | 56 | 67 | 94 | 187 | 281 | 374 | 749 |
| 7 | 27 | 32 | 36 | 41 | 54 | 68 | 81 | 113 | 226 | 339 | 452 | 904 |
| 8 | 32 | 38 | 43 | 48 | 64 | 80 | 96 | 134 | 268 | 401 | 535 | 1,070 |
| 9 | 37 | 44 | 50 | 56 | 75 | 93 | 112 | 155 | 311 | 465 | 621 | 1,242 |
| 10 | 43 | 50 | 57 | 64 | 86 | 107 | 128 | 179 | 358 | 536 | 715 | 1,430 |

<별표 2>

생산실명 표기(양식)

| 생 산 이 력 현 황(상세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
| エスにユ | 글씨표기 | 품 명 | () - 작물명 사일리지(롤/소포장)·헤일리지·건초 | | | | | | |
| 품질등급 | 150포인트 이상 | 중 량 | | | | | | | |
| 생산자명 (연락처) | | 생산지역 | ()시·군 ()읍·면·동 ()통·리 | | | | | | |
| 생산일자 | 년 월 일 | 첨가제 | 사용, 미사용 | | | | | | |
| 유통(공급)업체 (연락처) | | 주 소 | | | | | | | |
| 주의사항 |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. | | | | | | | | |

| 생 산 이 력 현 황(약식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|--|--|--|--|--|
| 품질등급 | 글씨포기 150포인트 이상 | 품 명 | () <i>- 작물명</i> 사일리지(롤/소포장)·헤일리지·건초 | | | | | | |
| 생산자명 (연락처) | | 생산연월 | 년 월 | | | | | | |
| 주의사항 |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 | 한 구멍 등 | 파손 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. | | | | | | |

- *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%이상 생산이력현황(약식)을 부착하되, 생산자(공급자)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(상세)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
- *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20cm 이상 권장
- * 표시방법 :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, 열전사, 프린팅 필름, 스탬프 방식
- *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

<별표 3>

조사료용 기계·장비(예시)

| 작 업 명 | | 기계·장비명(규격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|
| 동 력 원 농용트랙터(135HP내외) | | 농용트랙터(135HP내외) | |
| 곤포 | 결 속 기 | 원형베일러(드럼폭174cm내외),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| |
| 장비 | 랩피복기 | 랩피복기(100cm*100cm 내외) | |
| | 적 재 기 | 적재기(로더, 그래플 포함) | |
| | 경운 | 플라우(4연) | |
| | 파종 | 파종기(12조), 진압기 | |
| | 시비 | 퇴·액비살포기(4톤), 비료·농약살포기 | |
| 日人 | 예취 | 모우어(2.4m) 및 컨디셔너 | |
| 부속 작업기 | 에게 | 하베스트(1~3조) | |
| 7 H/ | 정지 | 로타베이터리(80HP이상) | |
| | 방제 | 동력분무기(주행형 <i>,</i> 600ℓ) | |
| | 운반 | 트레일러(4톤), 로다 등 | |
| | 반전 및 집초 | 반전기(2로터 이상), 레이크(3.0m) | |
| フ] | 타 | 수확기, 절단기, 곤포사일리지 커터,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,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| |

*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·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

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

1. 대상 농업기계 :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·장비

2. 재 질: 테이프론 스티커

3. 주요 사양

| ← — | 11cm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작 업 기 명 | <u> </u> |
| 형 식 명 | 00000 | |
| (규격) | (000) | |
| 제조번호 | | 6cm |
| 제조업체 | 제조업체명(국명/주소) | 1 |
| (공급업체) | 국내 공급업체명 | \downarrow |

4. 부착위치 및 색상 :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

부착위치, 색상을 통일함

○ 부착위치 : 별표 5 참조

○ 색 상

- 바탕 : 노란색, - 글자 : 검정색(견고딕체 18p 굵게)

*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(국명/주소)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

<별표 5>

조사료생산 기계·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

| 기 종 명 | 부 착 위 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트 랙 터 | 핸들지지대 중앙, 엔진룸(정면 우측)중앙 |
| 플 라 우 | 주프레임 상단 |
| 로타베이터 | 동력전달부(체인, 기어) 반대 측면 |
| 퇴비살포기 | 적재함프레임 전면 |
| 파 종 기 | 주프레임 중앙 전면 |
| 트레일러 | 적재함프레임 전면 |
| 모 우 어 | 주프레임 중앙 전면 |
| 하베스트 | 주프레임 중앙 전면 |
| 레 이 크 | 주프레임 중앙 전면 |
| 베 일 러 | 중앙프레임 우측 |
| 랩피복기 | 주프레임 중앙 전면 |
| 적재기(로더포함) |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|

*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·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

34

2020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

| | | 계 | | | 획 | | | | 실 | | | 적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|-------|-----|---|
| | | | | 사업비 |](천원) | | | | | | |](천원) | | |
| | 물 량 | | 축발기금 | _n) | 지방비 | 자담 | 계 | 물 량 | | 축발기금 | | 지방비 | 자담 | 계 |
| | | 보조 | 융자 | 계 | , , , | , – | | | 보조 | 융자 | 계 | , , , | , – | |
|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·운송 비 | 톤 (ha) | | | | | | | 톤 (ha) | | | | | | |
| ② 조사료 유통비 | 톤 | | | | | | | 톤 | | | | | | |
|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- 경영체, 생산자단체 등 - 농업인 | (트랙터기준) 대 대 | | | | | | | (트랙터기준) 대 대 | | | | | | |
| ④ 초지조성 - 신규조성 - 기성보완 | ha ha | | | | | | | ha ha | | | | | | |
| ⑤ 기반시설지원목로개설용수개발전기시설부지정리진입로 개설 | km 공 km ha km | | | | | | | km 공 km ha km | | | | | | |
| ⑥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| 톤 (ha) | | | | | | | 、 (ha) | | | | | | |
|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| 개소 | | | | | | | 개소 | | | | | | |
|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| 개소 | | | | | | | 개소 | | | | | | |
|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| 개소 | | | | | | | 개소 | | | | | | |
| 합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[※]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,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(중복 대상자 제외)

[※]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

조사료 생산 ·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

| 1. 법인명(대 | 표명)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|
| 2. 설립연도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. 구성인원 | (명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. 소재지(주 | 소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. 연락처 | 사고 | 무실 | | | | | | 핸드 | 폰 | | | | |
| 6. 기계장비 | 지원실적 | 1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. 사업비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'16 | 3 ': | 17 | '18 | '19 | '20 | 계 |
| | 축발기금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지 방 비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자 담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계 | _ | _ | - | - | - | - | | _ | _ | | | _ |
| 나. 사업량(| (대) | | | | | | | | | | <u> </u> | 1 | |
| | | 트랙 | | 예취기 | 刈えっ |] 결속 | 7] 7 | 司보っ | l 저 | 재기 | 트레일러 | 기타 | 계 |
| | | 마력 | 수량 | الالدال | 日工人 | [연기 | / - | 77/ | | 71171 | | 714 | |
| | '12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13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15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16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17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18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19 '29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'20 계 | | _ | | _ | _ | | _ | | _ | _ | _ | _ |
| 7. 제조 운성 | -1 | 시 저 | | | | | | | | | | _ | |
| 가. 사업비(| | 근 ㄱ | | | | | | | | | | | |
| / / / 月日 / / | (U U)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'16 | 3 '- | 17 | '18 | '19 | '20 | 계 |
| | 축발기금 | 11 | 12 | 10 | 14 | 10 | 10 | | L / | 10 | 13 | 20 | |
| | 지방비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계 | - | _ | | - | - | - | | _ | _ | _ | | _ |
| 나. 사료작 | 물 생산량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.2.2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'16 | 3 ': | 17 | '18 | '19 | '20 | 계 |
| 1 11 11 | 생산량 | -14. | | | | | | | | | | | |
| 다. 사료작 | 불 재배면 | | | 14.0 | 14.4 | 14.5 | (- | 0 (| | 64.0 | 1 (4.0 | 600 | 1) |
| | 청 보 리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'10 | 6 | 17 | '18 | '19 | '20 | 계 |
| | 청 보 리 호 밀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라고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귀 리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기 티 | | | | | | | | | | | | _ |
| | 계 | _ | _ | _ | _ | _ | _ | | _ | _ | _ | | _ |

0000 사업 완료 및 정산서

(시 ·군 보관)

- 1. 작성년월일 :
- 2. 작성자 직·성명 :
- 3. 사업대상자 성명·주소: (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)
- 4. 사업비 집행명세
- ㅇ 총괄표

| | 사 | 업 | 계 | 획 | | | | | 집 | 항 | } | 백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|----|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|----|----|
| 계 | 축발: | 기금 | 기 | 방비 | 자 ^년 | 부담 | ブ | 4 | 축발 | 기금 | 지병 | 방비 | 자 | ·담 | 비갶 |
| 천원 (100%) | (|) | (|) | (|) | (|) | (|) | (|) | (|) | |

- ※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
- 세부명세(집행액 기준으로 작성)

| 세부시설 (사업)명 | 소요자재 (인력)명 | 규 격 | 단 위 | 수 량 | 단 가 (천원) | 금 액 (천원) | 기 타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0000 | 계 0000 0000 · | | | | | | ∘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 기재 - 자재구입 ·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(영수증 등) 별도 첨부 |
| 0000 | 계 0000 0000 | | | | | | |
| 합계 | | | | | | | |

※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

'20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·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

(ㅇㅇ 시·도)

(단위 : ha, 기, 백만원)

| ,1 7 | 제조비 | 지원 | 기계·장 | 비 지원 | 계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시·군 | 사업량(ha) | 사업비(A) | 사업량(기) | 사업비(B) | (A+B)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계 | | | | | |

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

| | 재 배 면 계 획 | | | | | | | (ha) | | | | 생산 | ·구매링 | · (톤) | | 소 | 요사 | 업 비 (천 | [원) | |
|-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|
| 시군명 | 경영체명 | | 7 | 계 획 | | | | 4 | 실 적 | | | | 실 | 적 | | 계 획 | | | 실 적 | |
| | | 보리 | 호밀 |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| 기타 | 계 | 보리 | 호밀 |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| 기타 | 계 | 계 획 | 물량 | ha당 생산량 | 축발 기금 | 지방비 | 계 | 축발 기금 | 지방비 | 계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[※]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(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)

기계·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

| | | | | | 지 | f | <u>1</u> | 실 | 적 | 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시군명 | 연결체명 | | 사 업 | 비 (천원) | | | | | 사 | 업 량 | (대) | | | |
| 기간병 | 선설세팅 | 축발기금 | 지방비 | 자담 | 계 | 巨型 | 백터 | 예취기 | スショ | 결속기 | 히보 기 | 적재기 | 트레일 러 등 | 계 |
| | | 그 크기 ㅁ | 71.9 -1 | 기타 | 711 | 마력 | 수량 | ગામાળ | 月五八 | (원기기 | 77/ | 77/1/1 | 러 등 | /1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소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소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계 | 개소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2020년도 사료작물·목초종자 공급 실적

ㅇㅇ 시·도

(단위 : kg)

| 7 11 | | 정 * | 책 지 원 | 분 | | ス | 가확보 | 분 문 | 계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구 분 | 농협 경제지주 | 낙농 육우협회 | 국립 종자원 | 기타 | 소 계 (A) | 자가 채종 | 자체 구입 | 소 계 (B) | (A+B) |
| • 전작(하계) | | | | | | | | | |
| - 옥수수 | | | | | | | | | |
| - 수단그라스 | | | | | | | | | |
| - 연 맥 | | | | | | | | | |
| - 유 채 | | | | | | | | | |
| - 기 타 | | | | | | | | | |
| • 답리작(동계) | | | | | | | | | |
| -호밀 | | | | | | | | | |
| - IRG | | | | | | | | | |
| - 청보리 | | | | | | | | | |
| -기타 | 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 | | | | |

섬유질배합(가공)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

| 1. 법인명(대 | 표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|----------|--------|----|
| 2. 설립연도 | -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. 종사원(미 | 평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. 소재지(| 주소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. 연락처 | | 사고 | 구실 | | | | | | | | | 핸드폰 | | |
| 6. 지원실적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. 사업비 |](천원 | <u>l</u>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 분 | <u>'</u> '1 | 277 27 ' | 13 | '14 | 6 - | 15 | '16 | 3 | '17 | '1 | 8 | '19 | '20 | 계 |
| 축발기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방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자 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 합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나. TMR | 사료 | 생산 실적 | 적(단위 | 위 : 톤 | -, %)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사. | 료사용 | 량 | | 국니 |]산 | _ |
| | | | 생신 | :량 가 | 동율 | 국١ | 내산 | | 입산 | | | 조사료 | | 비고 |
| | | 상반기 | | | | | | | | | | <u> </u> | | |
| | '15 | 하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'16 | 하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생산능력 | '17 | 하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: 톤/일 | | 상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'18 | 하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'19 | 하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'20 | 하반기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ठॅ | :-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

※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기간(10년) 동안 비치·관리 함.

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

| 1. 법인명(| 대표ス |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
| 2. 설립연 | | | | | | | | | | | |
| 3. 종사원 | (명) | | | | | | | | | | |
| 4. 소재지 | |) | | | | | | | | | |
| 5. 연락처 | | | 사 | 무실 | | | | | 핸드폰 | | |
| 6. 지원실 | 적 | | | | | | | | | | |
| 가. 사업 | 비(천 | 원) | | | | | | | | | |
| 구 년 | - | '15 | | '16 | | 17 | ' 18 | '19 | '20 | | 계 |
| 축발기금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 방 비 | | | | | | | | | | | |
| 자 담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 | | | | | | |
| 나. 조사 | 료유등 | 통센터 시 | ·업실 | 적 (단위 | 위 : 톤 | - , %) | | | | | |
| | | | | | 소포정 | { } - | 원형 | 베일 | | | |
| | | | | | | | | 가동 | 계(A+] | B) | 비고 |
| | | | | 생산학 | 냥(A) | 가동율 | 생산량(E | 3) ´1 ° 율 | | | |
| | | 상반: | フ] | | | | | | | | |
| | '15 | 하반 | 기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: | 기 | | | | | | | | |
| | '16 | 하반 | 기 | | | | | | | | |
| 소포장조 | | 계 | | | | | | | | | |
| 사료생산 | | 상반: | 7] | | | | | | | | |
| 능력 : | '17 | 하반 | 기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
| 톤/일 | | 상반: | 기 | | | | | | | | |
| | '18 | 하반 | 기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: | | | | | | | | | |
| | '19 | 하반 | 기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
| | | 상반: | | | | | | | | | |
| | '20 | 하반 | 기 | | |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 | | |
| | | 합 계 | | | | | | | | | |

[※] 소포장조사료 생산량과 원형베일 생산량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

위 임 장

| 급 액 | 일금 | | 원정(₩ | |) |
|-----|---------|--|------|-----|---|
| 수임자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 | |
| | 업체명 | | | 대표자 | |
| | 소재지 | | | | |

상기 금액을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(기계·장비)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위 임 자 경영체(업체)명:

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:

○○시장·○○군수 귀하